제7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길 18(용두동) 동아에스티(주) N동 7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안건 참고자료 참조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PASS앱 인증,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하나은행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여의도동 43-2)
     연락처 : 02-368-5800(대표번호)

6. 주주총회 참석 안내
   가)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소집 및 배당금 지급 통지 방법 안내

구 분	통지 방법	관계법령
① 주주총회 소집	·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 발행주식총수 1% 초과 주주 개별 통지	· 상법 제5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정관 제19조 2항
② 배당금 지급	· 개별 통지	

금번 주주총회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아쏘시오홀딩스 (주)

대표이사 김 민 영 (직인생략)

[안건 참고자료]

● 제1호 의안 : 제7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dart.fss.or.kr) 공시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배당 예정내용 :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금 1,000원, 주식배당 0.03주

※ 금번 배당은 202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0조(소집지) (생략)	**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현행과 같음) <본항 개정 2026.03.26>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본항 신설 2026.03.26>	주주총회 개최방식 명시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6.03.26>	전자위임장,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등 개정 상법 반영
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② (신 설)	**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26.03.26>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6.03.26>	
<신 설>	**제30조의2(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03.26>	
제39조의2(위원회) ① (생 략) 1. (생 략)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 5. (생 략)	**제39조의2(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 5.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39조의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항 개정 2026.03.26>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6.03.26>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본항 신설 2026.03.26>	
⑦ (신 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항 신설 2026.03.26>	
⑧ (신 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26.03.26>	
<신 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6.03.26> 2.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6.03.26> 3.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30조의2, 제39조의2, 제39의3(제4항 및 제7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3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선임할 이사의 수 :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 이사 후보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추 천 인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5년이내 체납사실 여부 최근 5년이내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 령 상 결 격 사 유 유 무
이대우 (사내이사)	1972.08.10 이사회	(현)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 (전) 동아에스티㈜ 경영기획관리실장	없음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진영원 (사외이사)	1971.09.17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현) 한국생약학회 부회장	없음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수 : 1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추 천 인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5년이내 체납사실 여부 최근 5년이내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 령 상 결 격 사 유 유 무
정영진 (사외이사)	1973.12.03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외이사 (현) 법무법인(유) 현 파트너 변호사	없음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9기 한도승인 요청액 : 20억원

· 제78기 보수한도 승인액 : 20억원